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-1086호

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(안) 열람공고

1. 도시관리계획[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(안)]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.
2. 본 도시관리계획[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(안)]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4월 2일
서울특별시

1. 열람기간 : 열람공고 다음날부터 14일간
2. 열람장소 : 서울특별시청 균형발전본부 서부권사업과(☎02-2133-1565),
양천구청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(☎02-2620-3503)
3. 열람내용 :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(안)
 - 가. 구역명 :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
 - 나.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(안)에 관한 사항
 - 1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: 변경없음
 - 2) 도시관리계획 결정 : 변경없음
 - 3) 공공기여계획 결정 : 변경없음
 - 4) 건축계획 결정(변경)(안)
 - 가)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(변경) : 생략(열람도서 참조)
 - 나) 건축물 용도 결정 : 변경없음
 - 다) 건축물 건폐율·용적률·높이에 관한 결정 : 변경없음
 - 라) 건축물 배치·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 : 변경없음
 - 마)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

구분	도면표시	위치	면적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신설	특별계획구역15	목동 914-5번지	-	증) 20,566.5	20,566.5	체육시설 (한마음 공영주차장)

구분	도면표시	위치	면적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신설	특별계획구역16	목동 914번지	-	증) 20,000.0	20,000.0	운동장 (목동운동장 제척부지)
신설	특별계획구역17	목동 914번지	-	증) 106,133.4	106,133.4	운동장(목동운동장)

■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분	변경 내용	변경사유
신설	특별계획구역15 신설 (증 20,566.5㎡)	· 노후화 및 저이용 상태의 공공부지를 체계적으로 정비 하고, 주변 개발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 신설
	특별계획구역16 신설 (증 20,000.0㎡)	
	특별계획구역17 신설 (증 106,133.4㎡)	

5)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: 변경없음

※ 게재 생략된 내용(세부 조서, 계획 등)은 열람장소 비치 및 홈페이지 게재된 도서 및 도면으로 같음

4. 관계도서 : 열람 편의를 위해 열람장소에 관련 도서 및 도면 비치

5. 본 지구단위계획 변경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울특별시청 서부권 사업과 또는 양천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의견서(열람장소 비치 양식)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6. 본 공람(안)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부권사업과(☎02-2133-156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